

민주공화제의 '미국발' 계보: 대한인국민회와 〈대동단결선언〉

장 태 한 UC Riverside¹

요 약

이 논문은 상해 임시정부가 선포한 '민주공화제'의 새로운 '미국발' 계보를 제시하고 있다. 박찬승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1910년까지 국내에서 공화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9년 만에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었을까?" 더구나 1919년 민주공화제를 도입하면서 "민주공화제"에 대한 토론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는 것 또한 의문이다. 박찬승은 그 이유가 공화제 임시정부는 이미 대세였기 때문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17년에 상하이에서 14명의 명의로 해외 각지에 있는 크고 작은 단체의 대표자 회의인 민족대동대회를 열어 독립운동의 최고 기관으로 임시정부를 설립하자는 주장을 한 〈대동단결선언〉에 의해 민주공화제 수용이 더욱 확고해 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대동단결선언〉 발기인 14인의 대부분이 북경과 상해에서 활동했고 특히 1911년 중국혁명을 외적 요인으로 꼽고 있으면서 '중국발' 계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미주한인들이 민주공화제 도입을 주도했고 특히 안창호를 중심으로 대한인국민회와 신한민보가 민주공화제를 적극 주장하고 수용했다. 또한 〈대동단결선언〉 발기인에 박용만이 포함되어 있으나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필자는 이 논문에서 박용만을 통해 무형정부론이 〈대동단결선언〉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런데 〈대동단결선언〉에 관한 세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대동단결선언〉 원본이 독립기념관에 기증된 안창호의 유품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창호와 대한인국민회 그리고 〈대동단결선언〉과는 연계가 있다. 둘째, 1911년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에서 통과된 21조 의안과 〈대동단결선언〉 내용이 매우 흡사하다. 셋째, 〈대동단결선언〉에 서명한 14인 중에 박용만이 있다는 점이다. 즉, 민주공화제의 '미국발' 계보는 신한민보는 1909년부터 임시정부 건설론을 주장했고 1911년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는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고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신설 즉 무형정부 설립을 공식화했으며 1912년 중앙총회가 정식으로 설립됐으며 그것은 1917년 〈대동단결선언〉으로 연결되며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 도입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사회학적 상상력과 기록을 중시하는 역사학적 관점을 접목시켜 더 넓게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민주공화제의 토대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 논문을 끝내고자 한다.

주 제 어

민주공화제, 박용만, 대동단결선언,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안창호, 삼권분립, 대한민국임시정부

¹ UC Riverside 교수, 김영숙 재미동포연구소장(Edward.chang@ucr.edu)

I. 서론

이 논문은 상해 임시정부가 선포한 '민주공화제'의 기원을 사회학적 상상력(Mills, 1959)과 기록을 중시하는 역사학의 관점²을 접목시켜 새로운 관점에서 추적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1919년 4월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 정부를 만들면서 임시의정원에서 의결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다. 민주공화제의 핵심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주권의 운용이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3권분립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제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박찬승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했다. "1910년까지 국내에서 공화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9년 만에 이러한 상황이 초래되었을까?(박찬승, 2008: 305)" 더구나 1919년 민주공화제를 도입하면서 "민주공화제"에 대한 토론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박찬승, 2008: 305)는 것 또한 의문이다. 박찬승은 그 이유가 공화제 임시정부는 이미 대세였기 때문이다 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신용하는 이미 1880년대 이후에 개화파는 서양의 입헌국가 사상을 받아들여 입헌군주제를 지향하고 있었으며… 애국계몽운동기에 이르러 신민회는 국권회복과 동시에 입

² 윤경로는 "역사는 사료에 의해서만 말해질 수 있으며, 사료에 의해서만 정당성을 갖는 법"이라고 주장했다(윤경로, 1997: 227).

현공화국의 수립을 운동의 목표로 설정하였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밑거름이 되어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공화제를 채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신용하의 주장이 학계의 정설이 되다시피 하였고 학계에서도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박찬승, 2008: 306).” 또한 신용하는 신민회가 1906년 리버사이드에서 발기되었다고 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신용하, 1978; 이선주, 2003: 113). 전종익도 신민회의 기관지인 대한매일신보에 (1910.2.22.부터 3.3까지) 게재된 신채호의 “20세기 신국민에서 입현공화제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상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하고 있다(전종익, 2017: 226-227). 장규식은 “리버사이드 한인 타운은 한말 국권회복운동을 선도한 대표적 민족운동단체인 신민회의 요람이기도 하였다고 설명하면서 통용장정 제1장 2절에 “본회의 중앙총회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에 둔다”라고 했다면서 원래 리버사이드에 신민회의 본부를 두려고 했다고 한다(장규식, 2020: 147-148).

1917년에 상하이에서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조소앙 등 14명의 명의로 해외 각지에 있는 크고 작은 단체의 대표자 회의인 민족대동대회를 열어 독립운동의 최고 기관으로 임시정부를 설립하자는 주장을 한 〈대동단결선언〉에 의해 민주공화제 수용이 더욱 확고해 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³ 〈대동단결선언〉은 ‘국민주권론’을 확고히 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박찬승은 설명하고 있다(박찬승, 2008: 334). 한국 역사학계에서는 〈대동단결선언〉 발기인 14인의 대부분이 북경과 상해에서 활동했다는 점을 들어 1911년 중국혁명을 외적 요인으로 꼽고 있다. 신주백은 “선언에 동참한 사람은 대부분 중국 관내 지역에서 활동하던 인사였다”고 중국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주도해서 만든 선언문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신주백, 2017: 170).

³ 14인은 신규식, 박은식, 조소앙, 신채호, 윤세복, 신석우, 한진교, 신현민, 조성환, 이일, 김성, 홍위, 신무, 박기준, 그리고 박용만.

박찬승은 “한국의 근대국가 건설운동과 공화제” 논문에서 1880년대부터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정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한국에서 공화제 수용은 한말 신민회의 수용, 1910년대 중국혁명의 영향, 그리고 〈대동단결선언〉을 거쳐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진 것으로 대체로 정리되고 있다(박찬승, 2008: 307). 전종익은 “조선말의 실학자들은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서구문물을 접하면서 서구정치체제의 존재와 운영에 대해 이미 상당 수준의 인식에 도달해 있었다”고 주장한다(전종익, 2017: 223). 박찬승은 또한 “입헌군주제론이 공화제론으로 옮겨가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것은 1910년 대한제국의 국망과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박찬승, 2008: 341). 그러나 박찬승은 미주한인 사회에서 주장하고 실행에 옮겼던 “무형정부” 설립론은 주목하지 않았다. 전종익도 1910년 강제병합이후 독립운동은 국권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운동이념과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고 국민주권론을 받아 들였다고 설명하면서 미국의 한인회를 중심으로 공화제 정부 수립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작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전종익, 2017). 전종익은 특히 1909년 신한민보에 사설을 게재한 이상설의 국민주권론을 주목했고(전종익, 2017: 225-226) 미국 대한인국민회의 무형국가론이 임시정부의 건설로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전종익, 2017: 237). 그러나 전종익은 “국민회는 정부라기보다는 미주한인들의 자치활동을 위한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이를 임시정부 수립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전종익, 2017: 237-238).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1911년 대한인국민회는 중앙총회를 신설하여 해외한인을 대표하는 무형정부를 설립한다”고 발표한 점에 주목하면서 전종익과는 다른 결론에 도달한다. 즉 대한인국민회는 단순히 미주한인들의 자치활동을 위해서가 아닌 해외 한인을 대표하는 무형정부를 추구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선 전종익이 주목하고 박찬승이 설명한 1910년 대한제국 국망과

1911년 중국혁명 시기와 비슷한 시점에 미국에서 도산 안창호를 구심점으로 대한인국민회와 기관지인 신한민보가 무형국가론을 수용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특히 당시 신한민보 주필이었던 박용만이 〈대동단결선언〉 발기인 중 1인이었으며 박용만을 통해 상해로 전달되었을 가능성 있다. 즉 미주한인 사회에서는 이미 1911년 민주공화제 도입을 정식 통과시켰으며 실행에 옮겼고 대한인국민회를 주도했던 안창호와 박용만의 영향으로 1917년 〈대동단결선언〉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 도입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제기하고자 한다.

특히 신민회는 1906년 미국 리버사이드에서 안창호를 중심으로 발기되었고 1907년 한국에서 조직되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된다. 중국 공산혁명에 참여했던 “김산은 자신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2 번째 사람이 안창호라고 밝히면서 안창호는 공산주의자는 아니지만 공산주의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Wayles & San, 1941: 118-121).” 따라서 안창호는 무장 독립투쟁을 주장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파의 지지도 얻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대동단결선언〉에 관한 세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대동단결선언〉 원본이 독립기념관에 기증된 안창호의 유품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안창호와 대한인국민회 그리고 〈대동단결선언〉과는 연계가 있을 수가 있다. 둘째, 1911년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에서 통과된 21조 의안과 〈대동단결선언〉 내용이 매우 흡사하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셋째, 〈대동단결선언〉에 서명한 14인 중에 박용만이 있다는 점이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임시정부 건설론을 가장 강력히 주장하고 초안을 작성한 사람은 바로 박용만이다. 따라서 〈대동단결선언〉 내용과 1910년대 초반부터 대한인국민회에서 추구해 온 임시정부 건설론 그리고 무형정부 수립 내용과 유사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민주공화제”에 대한 토론이 거의 없이 상해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도입한 이유는 미국에서 1905년 공립협회가 설립되었고

1906년 리버사이드에서 발기되어 1907년부터 한국에서 신민회 활동을 했으며 1909년 설립된 대한인국민회에서 이미 “민주공화제”를 도입하고 제도화하여 실행하고 있었고 이미 검증된 제도로 이미 대세가 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가능성을 주장한다.

지금까지 발표된 민주공화제에 대한 논문들은 민주공화제 개념과 도입 과정에 초점이 마추어져 있고 〈대동단결선언〉으로 상해임시정부의 민주공화제 도입이 확고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⁴ 또한 별다른 이견 없이 민주공화제를 수용한 이유는 내적과 외적 (종국) 요인이 있다고 했으나 민주 한인들이 주도하고 대한인국민회가 실행에 옮긴 민주공화제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 논문은 민주공화제의 다른 ‘계보’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지금까지는 1911년 중국혁명의 영향과 1919년 상해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중국발’ 계보가 중요시 되어 왔으나 이 논문에서는 1905년 공립협회, 1909년 이후 대한인국민회, 1911년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로 이어지는 ‘미국발’ 계보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그것이 1917년 〈대동단결선언〉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 논문에서는 미주한인 사회에서 주창한 임시정부 건설론과 1911년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에서 통과된 21조 의안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신설을 중점으로 살펴보고 〈대동단결선언〉과의 연계성을 다루고자 한다.

⁴ 민주공화제 개념과 도입 과정과 〈대동단결선언〉은 다음 논문들 참조. 윤대원(2001), 이영록(2010), 정상호(2013), 신주백(2017), 박찬승(2008), 서희경(2013).

II. 대한인국민회와 〈대동단결선언〉

신주백은 “〈대동단결선언〉은 당시 해외에서 활동하던 민족운동의 주요 지도자 대부분이 서명한 문서로서, 1917년 당시 민족운동가들의 정치사상과 민족운동 방법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문헌이다. 선언에 따르면, 여러 민족운동 단체가 대동단결하여 장래 계획을 협의할 수 있는 통일기관을 결성하고, 이 기관을 발전시켜 임시정부를 수립하며,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벌여 독립을 획득한다는 전망을 제기하였다”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신주백, 2003: 2-13). 또한 대동단결론은 대동세계라는 전통적인 이상사회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신주백, 2003: 5). 즉, 〈대동단결선언〉이 1919년 도입된 민주공화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건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동단결선언〉과 미주한인 사회의 임시정부 건설론과 무형정부 건설론을 연계시키지 못했다.

김도훈은 “임시정부 건설론”을 설명하면서 1905년부터 1910년대 초반까지의 미주한인 사회에서 독립운동 단체의 통합운동을 주목했는데(김도훈, 1999: 246-270) 이 논문은 미주 한인사회가 추구한 “민주공화제”의 제도적 확립과 〈대동단결선언〉과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한다. 임시정부 수립 운동은 대한제국이 망할 무렵인 19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 기관지인 『신한민보』는 1910년 7월 6일 사설에서 “현 정부가 일본에 투항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즉, 우리는 인민의 정신을 대표하여 우리의 복리를 도모할 만한 정부를 세울 것임을 천명했다.”⁵ 또한 이미 1905년 4월 5일 설립된 공립협회는 3권분립에 의한 한인자치기관으로 활동하면서 일제의 간섭에 대항하고 있었다고 밝혔다(김도

5 “슬프다 나라가 죽어도 그 백성은 아픈 줄을 알지 못하는가.” 『신한민보』 1910년 7월 6일.

훈, 2004: 135). 김도훈은 또한 1905년 설립된 공립협회와 대한인국민회(1910)가 주도적으로 임시정부 건설론을 주도했다고 밝히고 있다(김도훈, 1999: 246-247). 공립협회는 본부를 샌프란시스코에 두었으나 공립협회 설립을 주도한 주축 세력은 바로 리버사이드에 거주했던 한인들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장태한, 2018: 14).

김정인(2017)은 “1910년대에 임시정부 수립 운동을 전개한 독립운동세력이 내놓은 해외 한인 자치를 위한 규범이나 장정 속에 포함된 헌법적 원리들은 1919년 임시정부가 내놓은 임시헌장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고 밝히고 있다(김정인, 2017: 26). 따라서 미주한인사회에서 1905년부터 추구한 삼권분립에 의한 자치기관과 임시정부 건설론 그리고 〈대동단결선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동단결선언〉과 대한인국민회에서 통과시킨 임시정부 건설론 그리고 1911년 12월 4일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에서 통과된 21조 의안 내용을 비교하면서 연계성을 찾아보자. 방선주는 대한민국 정부 설립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정복하자마자 미국에 본적을 두고 있던 국민회에서 우리야말로 한민족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가 정부라고 주장하고 나서 민중의 호응을 받았고, 또 그 흐름을 탄 인사들이 상해 망명정부 결성에 참여하여 이 망명정부가 4반세기 존속하였다가 대한민국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방선주, 1989: 45).

“융희황제가 3보(토지.인민.정치)를 포기한 8월 29일은 즉 우리들 동지가 3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이 때 순간도 멈추거나 쉼이 없음이라. 우리들 동지는 완전한 상속자니 그(융희)의 황제권 소멸의 때가 즉 민권 발생의 때요, 구한국 최종의 하루는 즉 신한국 최초의 하루이니, 어찌 연관 없겠는가. 우리의 한은 처음부터 한인의 한이오, 비한인의 한이 아니라. 한인간의 주권수수는 역사상 불문법(명실상부의 뜻)의 국현이오. 비한인에게 주권 양여는 근본적 무효요, 한국민성(한국민의 성정)의 절대 불허하는 바이라, 고로

경술년 융희황제의 주권 포기는 즉 우리 국민 동지에 대한 묵시적 선위(권위를 양도함)이니 우리 동지는 당연히 3보를 계승하여 통치할 특권이 있고, 또 대통을 상속할 의무가 있도다(신주백, 2017: 170 재인용).”⁶

또한 방선주는 〈대동단결선언〉에 부록으로 제의의 강령이란 것이 7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분석하면서 박용만이 주장한 것이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제의’ 전부가 혹은 강하게 혹은 약하게 박용만이 주장하던 것임을 발견할 수 있다. 즉 1, 5, 6은 그가 1908년 텐버에서 열렸던 애국동지회에서 이야기되었던 것이고 2, 3, 4, 5는 그가 1911년에 목청높이 외쳤던 사항들임에 틀림없다”고 밝히고 있다(방선주, 1989: 95). 제의의 강령 7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해외 각 지에 현존한 단체의 대소은현 막론하고 결합통일하여 유일무이의 최고기관을 조직할 것.
2. 중앙총본부를 상당한 지점에 위치하여 일절한족을 통치하며 각 지지부로 관할 구역을 명정할 것.
3. 대헌을 제정하여 민정에 합한 법치를 실행할 것.
4. 독립평등의 성권을 주장하여 동화의 마력과 자치의 열근을 방제할 것.
5. 국정을 세계에 공개하여 국민외교를 실행할 것.
6. 영구히 통일적 유기체의 존립을 공고히 위하여 동지자 간의 애정을 수양할 것.
7. 위 실행방법은 기성한 각 단체의 대표와 덕망이 유한 개인의 회의로 결정할 것.

(방선주, 1989: 95)

이러한 〈대동단결선언〉 내용은 미주한인 사회에서 1910년대부터 이미 임시정부 건설론을 꾸준히 제기했고(김도훈, 1999: 246-270) 대한인국민회

⁶ 〈대동단결선언〉, 4p (『한국학논총』 9, 1987 수록).

가 삼권분립에 근거한 대의회와 자치규정 그리고 의무금 등을 제도화하고 실행해 온 내용들과 흡사하기 때문에, 〈대동단결선언〉과 대한인국민회와의 연계성은 높다. 즉, 대한인국민회와 리버사이드에 1900년대 초부터 설립된 미주한인 최초의 한인 동네인 파차파 캠프 및 타 지역의 미주 한인사회는 이미 민주공화제를 제도화하고 실천하고 있었다. 장규식도 “주목할 점은 이러한 안창호의 독특한 민족운동론과 국민국가 구상의 원형이 리버사이드 한인 타운에서의 ‘안도산공화국’ 실험을 통해 마련되었다는 사실이다(장규식, 2020, 150).” 파차파 캠프는 엄격한 규율을 제정하고 위반하는 사람들에게는 벌금을 내게 했는데 『신한민보』 1911년 12월 11일 기사는 “하변동의 자치 규정”이라는 제목으로 상세히 보도했다. 약장 제 1조는 본 지방에 거류하는 조국 동포의 타락함을 견제 공동한 행복을 구하며 지방 자치를 실행하기 위하여 왼쪽에 기록한 약장을 정한 일. 제2조. 술을 금지할 일. 제3조. 노름을 금지할 일. 제4조. 아편을 금지할 일. 제5조. 쟁투를 금지할 일. 제6조. 이상에 약정한 규정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자치부 벌칙에 처할 일.

1910년대부터 미주 한인들은 민주 자치규정을 제도화하고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동단결선언〉에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었으며, 추후 상해임시정부 수립 때 별다른 이견이나 토론 없이 민주공화제를 수용 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 것이다.

III. 파차파 캠프: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⁷

〈대동단결선언〉과 대한인국민회 제3차 북미총회에서 의결된 21조

⁷ 파차파 캠프에 관한 내용은 장태한(2018)에서 인용했음을 밝혀둔다.

의안과의 연계성을 알기 위해서는 1911년 제3차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가 리버사이드의 파차파 캠프에서 열린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1902년 10월 14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안창호 부부는 그곳에서 약 1년 6개월 거주했는데 필자가 114년만에 발굴한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지에 (자료 2: 1902년 12월 7일) 실린 안창호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도형이 제기한 의문에 대한 답변을 알게 되었다. “안창호 부부가 1902년 10월 7일 자로 미국에 입국한 것은 확실한데, 이상한 것은 왜 날짜가 다른 두 개의 인장(stamp)이 찍혀 있을까 하는 점이다. 하나는 ‘U.S. Immigration Service, OCT 7 1902, Commissioner’이라고 하여, 1902년 10월 7일 미국 이민국 국장의 인장이다. 또 다른 하나는 ‘U.S. Immigration Service, OCT 14 1902, Port of San Francisco’이라고 하여, 1902년 10월 14일 미국 이민국 샌프란시스코 항구의 인장이다(김도형, 2015: 10).” 그 이유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인터뷰 기사로 밝혀졌다. 원래 일정은 하와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것이었는데 하와이에서 배를 잘못 타게 되었다. 그래서 캐나다 밴쿠버로 갔으며, 그곳에서 다시 배를 타고 시애틀을 거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것이다. 그래서 김도형이 밝힌 것과 같이 도산 안창호의 여권에는 캐나다 밴쿠버 인장 옆에 1902년 10월 7일 미국 이민국장 인장과 1902년 10월 14일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장 인장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김도형, 2015: 10).

도산은 1904년 3월 23일 기차로 리버사이드에 도착한 직후 하루에 \$2.50 벼는 허드렛일을 하는 직업을 찾을 수 있었다(Kim, 1996: 33). 도산의 막내 아들 안필영(랄프)은 어머니 이해련 여사의 외오숙촌인 김인수가 리버사이드에 거주하고 있었고 도산을 리버사이드로 오도록 권유했다고 필자에게 전해 주었다.⁸ 김인수는 최초로 리버사이드에 정착한 인물 중의 한 사람이며 초기 파차파 캠프 운영을 책임진 중요한 인물이다. 『신한민보』

⁸ 2017년 7월 12일 안필영(랄프)으로부터 온 이메일.

(1910년 10월 5일) “리버사이드 지방 이곳은 미국(에 한인들이) 올 때에 제일 먼저 창설한 한인의 동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단체를 처음 시작하며 지방 회가 제 일차로 설립된 곳이더니”라고 보도했는데 김인수와 아들 김용련이 초기 리버사이드 한인타운 설립 및 운영의 중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산 안창호가 한국에서 신민회 활동을 하고 자주 타 지역을 순방할 때 이혜련 여사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막내 아들 랄프는 증언해 주었다. 김인수는 그후 중가주의 델나노(Delano)로 이주하여 큰 농장을 운영했고 아들은 리버사이드에 남아서 농사를 지었는데 김용련의 딸 바이올렛(Violet)은 교사로 근무하다가 은퇴했다.⁹ 이처럼 리버사이드 한인타운은 미주 한인이 제일 처음 세운 동네이며 대한인국민회 지방회가 최초로 조직된 곳이다.

리버사이드의 파차파 캠프는 미 최초의 한인타운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미국으로의 집단 이주는 1903년 1월 13일 하와이로의 이주로 시작됐으며 미 본토에는 1910년대에 1,000명 미만이 살고 있었다. 따라서 하와이가 미 최초의 한인타운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하와이에 도착한 대부분의 한인 노동자들은 여러 섬의 여러 사탕수수 농장으로 흩어져 거주하면서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따로 한인타운을 형성할 수 없었다.¹⁰ 실제로 1903년 하와이 최초의 한인 교회인 한인감리선교회의(Korean Methodist Mission) 명단을 보면 대부분의 주소는 에바 (Ewa) 사탕수수 농장이다. 참고로 당시 하와이 지역은 감리교단에서 선점하여 장로교는 선교활동을 못했고 많은 한인 장로교인들이 불만을 나타냈다는 기록도 있다. 동시에 샌프란시스코는 소수의 인삼 상인들이 경쟁 관계에서 거주하던 곳이었고 본토로 이주한 한인들은 극심한 인종 차별로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제대로 된 직장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는 본토 이주

⁹ 랄프 앤, 2017년 7월 18일 필자에게 이메일 메시지로 설명 보내옴.

¹⁰ 유동식(1988)은 “하와이로 이주한 한인들이 각 섬에 있는 40여 개의 농장으로 분산되어 갔다. 한 곳에 30여 명으로부터 많은 곳은 2, 3백 명까지 집단으로 거주하면서 노동에 종사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인들의 임시 거주지였으며 취업을 위해 타 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한인타운을 형성하지 못했다. 1904년 말 또는 1905년 초부터 형성된 리버사이드의 파차파 캠프가 미 최초의 한인타운이라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 1) 한 지역에서 한국인들이 모여서 집단 거주 지역을 형성하면서 자체적으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민족 공동체를 형성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씨앗이 뿌려진 곳이 바로 파차파 캠프이다. (도산 공화국)
- 2) 직업소개소를 창업하여 이후 한인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한인들이 모여들어 한인타운 형성이 가능했다.¹¹
- 3) 미혼 남성 중심의 타 지역 한인 거주 지역과는 달리 여성과 아이들이 함께 가족 중심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결혼식, 생일잔치, 강연회 등 활발한 한인 공동체 활동을 전개했다. 도산의 장남 필립은 1905년 로스앤젤레스 병원에서 출생했으나 리버사이드 거주했고 차남 필선은 1912년 리버사이드에서 출생
- 4) 한인장로 선교회를 조직하여 예배 활동과 자녀 교육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5) 도산 안창호의 리더십으로 독립운동의 초석을 다지면서 1905년 공립협회를 창립하고, 1906년 신민회를 발기 했으며, 1909년 대한인국민회와 1913년 홍사단을 조직하는 민족 공동체 역할을 담당했다. 도산 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한인타운은 민족적 그리고 행동하는 리더십의 본보기가 된다.
- 6) 리버사이드 거주 한인들이 “일본 식민국민”이 아니며 미주 한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직접적 동기를 마련해 주었고 미주 한인들은 지속적으로 독립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장태한, 2018: 25-26)

¹¹ 1905년 3월 5일자 Riverside Daily Press 광고에는 주소가 127 Cottage Street였다가 10월 20일자에는 1532 Pachappa Ave, Sunset phone Red 3677로 바뀌었다.

안창호는 파차파 캠프를 민주주의 한인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었다. 1905년 한인 노동국을 설립하여 한인 노동자들이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한인 이민자들이 리버사이드 파차파 캠프에 정착했다.¹² 도산 안창호는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을 시켰다. “팀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야구 규정으로 시작한다. 아이들은 팀 워크를 빨리 배웠다. 돈을 번 사업가는 투자를 하고 일반인들은 자립심과 협동심을 갖도록 권유했다. 도자기, 출판, 신문사 등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서로 협력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Thun, 1997: 18).” 경찰과 감찰관 제도를 도입하여 한인 공동체는 자치적으로 운영되었고 민주주의 절차를 중시하면서 대한 독립을 위한 열정을 쏟아낸 곳이다. 파차파 캠프는 단순히 한인 노동자들의 임시 거주 지역이 아니었다. 당시 리버사이드에 형성된 한인타운은 임시 주거 지역이 아니었으며 초기 미주 한인 사회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을 형성한 것이다. 즉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서 고된 일이 끝나면 한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결혼식, 생일 잔치, 토론회, 강연회 등도 개최되었다. 또한 공립협회와 대한인국민회 리버사이드 지방회를 중심으로 독립 운동에도 적극적이었으며, 1906년 신민회 발기도 리버사이드에서 하였다.¹³ 그리고 대한인국민회와 흥사단이 창단 되었을 때 도산 가족은 리버사이드에 거주했다. 다만 본부는 샌프란시스코에 설립했던 것이다. 따라서 리버사이드의 파차파 캠프는 도산 안창호의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의 메카 역할도

12 한인 노동국과 오렌지 농장에 대해 다음 문헌 참조. Moses, Vince. 2000. *Riverside Daily Press*, “Korean Labor Bureau” March 22 and October 20, 1905. *Riverside Daily Press*, January 8, 1906.

13 신용하(1978), “도산 안창호와 신민회의 창립” 도산사상연구회편 『안도산 전서』 하. 서울: 범양출판부, 52p. 이선주 (2003: 113)에서 재인용. 신용하에 의하면 도산이 이강과 임준기 등 한인공립협회 회원들에게 대한신민회의 창립을 발의하고, 대한신민회 취지서와 대한신민회 통용 장정을 초안하였다고 설명. 이 단체가 국권회복운동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반드시 본국에서도 발기하여 조직되어야 한다는 데 합의하고, 신달원, 박영순, 이재수 등이 여비와 조직활동자금을 마련하여 도산을 대표로 한국에 보냈다.

담당했던 것이다.¹⁴

따라서 1911년 가을, 안창호가 가족들이 있는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로 돌아온 후, 대한인국민회는 조직을 재정비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되며 리버사이드는 당시 미주 한인 독립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1911년 11월 23일부터 제3차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가 리버사이드에서 개최된 것이다. 도산 안창호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동안 (1907-1911) 하와이의 합성협회와 국민회가 합병하여 1909년 국민회의를 설립했으나 지도자 부재로 활동은 위축된 상태였다.

장규식은 리버사이드 한인사회와 서간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14년 리버사이드지방회에서 서간도 독립 운동 기지에 세워진 신흥학교에 의연금을 전달한 데서 살필 수 있듯이, 실제 리버사이드 한인 타운과 서간도 독립운동 기지는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다(장규식, 2020: 151-152).” 또한 장규식에 의하면 “안창호는 리버사이드에서의 ‘안도산공화국’ 실험을 밀산과 서간도에서의 독립운동 기지 건설로, 이상촌 건설로 이어나갔다. “1910년대 민족운동의 트렌드였던 국외 독립운동 기지의 건설이 리버사이드 한인 타운에서의 ‘안도산공화국’ 실험을 그 모델로 삼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인 타운을 모태로 성립한 공립 협회-국민회는 미주를 넘어 국외 한인사회 전반에 걸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한인 타운에서의 디아스포라 실험을 모델로 태동실업회사를 설립해 중국 흑룡강성 밀산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려 하였다(장규식, 2020, 151).”

¹⁴ Kim, Hyung-chan(1996, 85). 김형찬은 도산이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대한인국민회 회원의 숫자가 줄어들었고 지도자 부재로 대한인국민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IV.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와 〈대동단결선언〉

1911년 11월 23일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의 파차파 캠프에서 개최된 제3차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에서 임시정부 건설론과 무형정부 건설론이 전격 통과되었는데 의결된 21조 의안 내용과 1917년 〈대동단결선언〉과 매우 흡사하다.

〈대동단결선언〉을 요약하면 1) 주권행사의 의무·권리는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설, 2) 일제에 구속되어 있는 국내의 동포 대신 해외의 동지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3) 주권을 가지고 국가적 행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약 1백만 명의 해외동포에게 50만 원의 연수입을 거두어 공동 기업을 운영하면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 4) 통일기관·통일국가, 원만한 국가의 3단계 요령을 제시하였다. 이 내용들을 1911년 12월 4일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시의 파차파 캠프에서 개최된 제3차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에서 통과되고 실행에 옮긴 21조 의안과 비교해 보자.

〈대동단결선언〉의 첫 번째 조항은 “주권행사의 의무·권리는 국민에게 있다는 기틀이라. 이러한 관계를 알고 어찌 그 성질을 연구함이 없겠는가.” 이렇듯 대의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은 인민을 대표해서 법을 제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 대의회 의결안 제19항은 “각 임원을 투표하여 뽑음이 아래에 기록함과 같다”고 명시했는데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 총무 이 일, 서기 송종익, 재무 송종익, 법무원 강번, 학무원 조성환, 구제원 류성숙 외교원 이 일 등이 선출되었다. 안창호는 실업기본공채 연구위원과 세칙 제정 기초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신한민보』(1911년 12월 11일)는 리버사이드에서 10여 일 동안 개최된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 소식을 “국민회의 신서광. 대의회 결안을 치하함”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자세히 전했다. “11월 22일에 국

민회 북미 지방 총회장이 소집한 대의회는 12월 4일에 전부 의안의 결정을 마쳤다. 그러하니 전후 10여 일 세월이 대의원의 이상적 연구에 들어가 소마한 것이다. 우리 국민의 전체가 국가 민족의 복리를 모두 이 대의회에 부치고 어찌 되는 경향을 알지 못하여 눈을 씻고 전부 의안이 발표되기를 기다렸다. 이제 대의회의 소집을 가져 일반 동포에게 전하는 것이 마치 구름 속에 묻어 두었던 태양을 만리장천에 내어놓는 것과 같이 온 세계가 광명하며 만물이 고은 빛을 더한다. 그리하여 사람마다 손을 치며 즐겁게 맞이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한다.” 즉 대의회는 앞으로 대한인국민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는 의사 기관임을 밝힌 것이다.

〈대동단결선언〉의 두 번째 조항은 “일제에 구속되어 있는 국내의 동포 대신 해외의 동지가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이다. 대한인국민회 제3차 북미총회에서 통과된 21조 의안 안전 중 제 1항부터 5항은 모두 중앙총회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1911년 대한인국민회는 중앙총회를 신설하여 해외 한인을 대표하는 무형정부를 설립한다고 발표했고 1912년 실제로 중앙총회를 신설하여 해외 한인을 대표하는 기관을 발족시켰다. 사실상 대한민국 무형 정부 설립을 의미하고 있다.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는 미주 지역 지방회를 총괄하는 기관이고 (멕시코 메리다 포함) 중앙총회는 미주 지역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 극동 지역을 포함한 해외의 모든 지방회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나라로 치면 중앙 정부를 의미한다. 중앙총회를 신설하면서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 본부는 로스앤젤레스로 이전했고 중앙총회는 샌프란시스코에 세워 두 기관을 분리했다.¹⁵ 그런데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1909년 2월 1일 국민회를 창

15 『신한민보』 1911년 12월 4일자는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를 로스앤젤레스로 옮긴다고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지방총회를 로스앤젤레스로 옮기며 사무의 번거함을 덜어버리는 것이 국외에 자리를 잡은 회자는 소극적 주의로 잘못 생각하기 쉬울 터이다. 그러나 본회는 처음부터 적립한 기본금이 없으며 오직 회원의 의무금과 동포의 연보를 가지 고 오늘까지 유지하여 온 터이다. 오로지 아는 것은 나라일이라면 몸을 바침에 뉘우침이 없는 우리 동포가 국민회를 사랑함에 바다가 마르도록 그 마음이 변치 않으리라는 것이다.”

설했을 때부터 이미 설립할 것을 현장에 명시했다(방선주, 1989: 46-49). 현장에는 중앙총회의 역할에 대해 2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재무, 학무원, 법무원, 외교원 각 1인을 임명하고 회장과 부회장은 선거로 선출하며 각종 권한과 의결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방선주, 1989).

“중앙총회”에 대해 『신한민보』는 1909년 6월 2일자에서 “중앙총회 사무임시 대판”이라는 제목으로 처음 보도했고, 그 후에는 “임시 중앙총회”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했다.¹⁶ 1909년 대동보국회와 합병하면서 국민회는 대한인국민회로 개명되면서 중앙총회를 미국에서 노령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현지 사정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중앙총회가 가까이 있어야 모든 면에서 편리하다고 생각을 바꾸어 미국에 중앙총회를 설치하기로 변경됐다고 1910년 9월 28일자 『신한민보』가 보도했다. 『신한민보』 1910년 10월 16일자에서 중앙총회장 선거 소식을 보도했으며, 1911년 5월 24일자에선 “무형한 국가의 성립을 찬성”한다는 보도를 했다. 즉 미주한인 사회는 이미 1905년부터 무형정부 설립에 대한 토론이 시작되어 1911년 3월경 중앙총회를 설립하고 총회장을 선출했지만 조직구성을 하지 못한 유명무실한 단체였다. 1911년 12월 4일 대한인국민회 제3차 북미총회에서 중앙총회 설립을 공식화했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1912년 11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정식으로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설립되었고 윤병구를 회장으로 선출했다(Kim, 1996: 85-86).

김도훈(1999)은 “1910년대 초반 미주한인의 임시정부 건설론” 논문에서 1905년부터 1910년대 초반까지 미주 한인들이 해외한인단체 통합을 주도했는데 “북미 최초의 정치단체인 공립협회는 1907년부터 통일연합론에 바탕한 통일연합기관을 조직하고자 했다.” 또한 통일연합기관 설치가 마무리되자, “국민회는 이미 1909년 현장 제1장 제3조에 본회의 계급은 중

16 『신한민보』 1909년 6월 9일, 16일, 7월 14일, 10월 13일, 등

앙총회와 지방총회와 지방회의 세 가지로 구분했고 제1장 제4조 제1항에 중앙총회는 일정한 위치가 없고 시의의 편리함을 쫓아 둠”을 명시하여 중앙총회 설립을 기정화했다.¹⁷ “그러던 중 1910년 6월 일제의 ‘합방론’이 미주에 전해지자, 대한인국민회는 일제에 투항한 융희황제를 대한제국 군주로서 전면 부인하는 한편, 새로운 국민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910년 10월 대한인국민회를 국민을 대표하는 임시정부로 수립하고,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에 의한 자치제도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임시정부 건설론을 천명한 것이다. 이 발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인 최초로 국민국가에 바탕한 임시정부 건설을 제창하는 혁명선언이었다(김도훈, 1999: 269).”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신설을 가장 강력히 주장한 사람은 바로 박용만이다. 박용만은 1911년 국민개병설을 주장했는데 국민국가라는 개념을 중시하여 현대적 국민은 의무를 이행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 의무 중에서도 병역의 의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했다(방선주, 1989: 29).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는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1911년 1월 박용만을 『신한민보』주필로 취임한다고 선언했다.¹⁸ 박용만은 먼저 사회조직인 대한인국민회를 정치조직인 무형국가로 건설할 것과 조선 독립을 회복하기 위하여 무형한 국가를 먼저 설립해야만 국권회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무형국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반 국민단체를 정치적 제도로 조직하고, 둘째, 정치조직과 사회조직을 구별하며, 셋째, 모든 권리를 일반 동포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⁹ 박용만은 이 무형국가의 건설이 마땅히 미주와 하와이 한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⁰ 박용만은 정

17 『신한민보』 1909년 3월 24일자. 방선주, 1989: 46–48에서 인용.

18 『신한민보』 1911년 1월 11일자. 김도훈(1999: 258)에서 인용.

19 『신한민보』 1911년 4월 5일자 논설 〈조선독립을 회복하기 위하여 무형한 국가를 먼저 성립할 일〉.

20 『신한민보』 5월 3일자 논설. 김도훈(1999: 259)에서 인용.

치적 조직의 완전한 제도는 “첫째, 외국에 나온 조선민족을 마땅히 무형국 가와 무형한 정부 아래 통일할 일, 둘째, 완전한 헌법을 정하여 일반한인이 법률상 공민이 될 일, 셋째, 사람마다 의무를 담당하고 권리를 이용하게 할 일, 넷째, 정치적 구역을 나우아 행정기관이 효력을 얻게 할 일, 다섯째, 중앙총회로 권리를 모아 법률을 의지하여 호령이 실행케 할 일”로 규정했다(박용만, 1989: 60). 이러한 박용만의 주장이 1911년 12월 4일 통과된 21조 의안에 대부분 반영되었고 또한 1917년 〈대동단결선언〉과 연계되고 1919년 상해임시정부 민주공화제 도입으로 연결된 것이다. 박용만은 임시정부 설립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 회원만 관할하나 장자는 바다 밖에 나온 한인을 다 관할하자 함이요, 둘째는 의무와 권리를 분간하여 자치제도를 실행하자는 것이라고 하였다(박용만, 1989: 259). 또한 “국민회의 중앙총회를 조직한다 하여도 이미 만들 어 놓은 법률도 없고 무슨 차례를 정한 것도 없이 다만 총회장 하나만 뽑아 놓았으니 대저 총회장은 무슨 법률에 빙거하여 일을 처판하며 무슨 권리를 가지고 일을 행하며 재정은 어디서 얻으며 명령은 누구에게 전하리오”라고 물었다.”²¹ 박용만은 허울뿐인 중앙총회의 제도적 확립을 적극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박용만의 주장이 적극 반영되어 1911년 12월 4일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는 21조 의안을 통과시켰고 그 핵심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의 ‘제도화’였다.

1911년 12월 4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를 설립하면서 대한민국 무형 정부 설립을 공식화하면서 정부 기관은 국가 사무를 지휘하고 명령하는 기관임을 공표한 것이다. 『신한민보』 1911년 12월 4일자 3면에 21조 대의회 결의안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1항은 “『신한민보』 출판권을 중앙총회에 임여할 일” 제2항은 『신한민보』에 소속한 활찬제구의 일습을 아직 일 년

21 『신한민보』 5월 10일자 논설.

간 중앙총회에 차여할 일 제3항은 본 총회에서 수봉하는 의무금 중 오백원을 중앙총회에 수납할 일 제4항은 “원동 각 지방회는 중앙총회의 직접 관할 밑으로 옮길 일” 등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를 관할하는 상위기관임을 중시하고 있다. 『신한민보』 1911년 12월 4일자에서 “원래 중앙 총회는 전부 국민회를 통합하는 기관이고, 한 나라 정체로 말하면 일체 법령을 발하는 중앙 정부이다. 행정상 머리가 되어 국가 정무를 지휘하고 명령함에 그 권능이 절대적이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하고 중앙총회 즉 무형 정부에서 행정 명령을 내려 시행하고 자율규정을 제정하여 위법 행위자에게는 형벌을 가하는 삼권분립 제도의 형태가 확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신한민보』 1911년 12월 4일자에선 “그런 까닭에 해외 동포의 정치사상이 발달하는 때에 대의원의 안광이 먼저 이를 살펴 중앙총회의 위망을 보유하자는 의론이 발하였다. 이것은 본 회의 현장을 의지하여 정무의 권능을 중앙에 모을 뿐 아니라 일천 칸 넓은 집에 가장 힘을 쓰는 들보를 공경하는 것이다. 또한 원동의 각 지방을 관할하며 기관보를 발행하는 것은 단체의 혈맥을 연결하여 요무의 경기에 정신을 관통하는 것이니 반도 정국의 다사한 때를 당하여 가히 폐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보도했다.

〈대동단결선언〉의 세 번째 조항은 “주권을 가지고 국가적 행동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약 1백만 명의 해외동포에게 50만 원의 연수입을 거두어 공동기업을 운영하면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제3차 대한인국민회에서 통과된 21조 의안에는 중앙총회는 세금을 걷어 재정을 확보하는데 그 동안 내던 각종 의무금을 통합하여 연액 5원 즉 연회비 5원으로 정했고 1년 예산을 편성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21조 의안 중 제6항은 “의무금과 회금을 합병하여 년에 5원으로 정할 일” 그리고 제7항은 “각 지방회의 자치 경비는 매 회원에게 월 연금 10전씩 받을 일”을 확정하여 일종의 행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걷는 활동을 명시했다. 『신한민보』 1911년 12월 4일자는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대개 인민의 산업은 한 나라의 근본이다. 만일 민력이 피곤하면 어찌 그 정부를 보존하겠는가. 가령 전력을 다하여 단체를 존립할지라도 한국의 독립 회복은 장정 첫머리에 표방한 목적인데 길러 놓은 실력이 없으면 무엇으로 군국대사를 처분하겠는가. 그런 까닭에 각 항 의무금을 합병하여 연액(=한 해 동안의 총금액) 5원에 정하였으니 회원의 부담이 전보다 얼마만큼 가벼워졌다. 그뿐 아니라 전회(=전체 회의)의 세입 경상부는 5원 의무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제하였으니 1년도 회무에 관한 지출이 간략함을 쫓아 여액을 적립할지로다.”

중앙총회는 또한 예산을 투입하여 확고한 재정을 확보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즉 재정을 확보하여 농업, 상업, 또는 공업과 수산업과 같은 생산 경제 사업을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신한민보』 1911년 12월 4일자는 이렇게 보도했다. “이로부터 재정부의 사무를 정돈하여 각 년 미감한 문부를 청장하거나와 나머지 돈을 모와 큰일을 경영하는 것은 국가 제도의 굉장한 규모가 아니라 힘이 부치고 형편에 끌려 여러 해 달아 두었던 실업 문제를 다시 제출하여 캘리포니아 주 서편 옥야천리에 실업 기관을 열어 놓고 황금세계에 적극적 활동을 시험할 것이다. 그러하니 기본 금을 적립하자는 의안이 가결됨이 어찌 우연한 일이라 하리오.” 제20항은 “1912년도 예산안을 다음과 같이 승인함”이라고 명시했는데 아주 자세하게 의무금, 교육금, 구제금, 여비, 봉급, 사무소 비, 통신, 사무용품비 등 각 항목별로 예산이 자세히 책정되었다.

또한 중앙총회는 교육부를 신설하여 청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아라. 우리의 경애하는 교육부는 차차로 적립하는 금액이 침침히 드리웠던 장막을 헤치고 찬란한 빛을 흘리며 삼한 청년을 거두어 영웅 아이를 기를 것이다. 동포 제군이 만구일성으로 이를 환영하는 때에 반드시 기회를 얻어 그 방편을 의논하려니와 우리의 무형한 정부를 위하여 실업 교육의 전도를 하례함에 성심을 일치함이 가하도다.” 즉 중앙총회는 무형 정부

로 세금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임을 밝힌 것이다.²²

참고로 『신한민보』(1910년 7월 20일)는 “재미동포의 자치력”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미주 한인들이 경제적 부를 축척하기 위해 노동자에서 농업과 사업으로 경제력을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특히 청인들과 일인들이 장기간 사업을 꾸준히 하여 성공을 한 사례와 비교하면서 한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곳곳으로 돌아다니며 철로를 타는 데에 비용을 쓰고, 시간조차 낭비한다고 자성하면서 한곳에 정착하여 동포사업을 통해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조국의 독립에도 기여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1908년 미국과 일본과 체결한 “신사협정”으로 일본인들의 미국 신규 이민이 금지되자 일본계 미국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생업 터전을 마련하는 수단으로써 “노동자에서 토지를 소유한 농민으로”라는 전략으로 바꾼 것과 흡사하다고 하겠다(Takaki, 1989: 25-57). 『신한민보』 1910년 11월 2일자 보도에 일본 이민 정책과 일본의 일본인 만주 이주 계획과 연계시켜 다음과 보도한 것이 흥미롭다. “일본 이민 방침 – 일본이 미국으로 오는 이민 막는 것은 미국의 호의를 얻고자 할 일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오는 길을 터놓으면 한국과 만주로 갈자가 적을 터인고 미국으로 오는 길을 막고 한국으로만 몰아 놓으니 그 정책은 이달 1만 이민 집주칙을 보아도 도저히 알 일이다.” 이는 일본계 미국인들은 “신사협정”을 조국인 일본 정부가 일본계 미국인들을 버린 것으로 간주해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미국에서 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전략을 세운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미국에 정착하는 수단으로 ‘노동자’에서 ‘땅을 소유하는 농민’으로 생활터전을 바꾸기 시작했고 일본인들의 토지 소유에 반발한 캘리포니아 주 백인들은 1913

²² 『신한민보』 1911년 12월 4일.

년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을 제정하기도 했다.²³ 미주 한인들도 1910년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자 미국에 빨리 정착하여 사업으로 성공하여 조국의 독립에 기여한다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으며 『신한민보』는 이러한 정책을 보도하고 장려한 것인데,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이러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행정부 역할을 한 것이다.

〈대동단결선언〉의 네 번째 조항은 “통일기관 · 통일국가, 원만한 국가의 3단계 요령을 제시”한 것이다.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에서 통과된 21 조 의안에는 이러한 내용은 없다. 그러나 1913년 대한인국민회는 미국 정부로부터 사실상 (de facto) 미주 한인을 대표하는 단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소위 빨리 사건으로 알려진 한인 추방 사건으로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조그만 마을 헤멧에서 살구 농장으로 일하러 갔던 리버사이드 거주 한인 11명이 백인 폭도들에 의해 일본인으로 오인 받아 추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Kim, 2011). 이 사건으로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 분쟁 조짐이 생겼고 대한인국민회가 일본 정부의 간섭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면서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법적 지위도 확보된 초기 미주 한인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이 되었다.²⁴ 『신한민보』는 헤멧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보도했는데 이 사건을 빌미로 일본 정부는 미국 거주 한인들은 “일본 식민국민”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미국 정부에 공식 항의하여 이 사건은 미-일 외교 분쟁 조짐을 보였다. 일본 정부는 헤멧 벨리 사건이 발생하자 이것을 또다시 미국과 일본 관계를 보다 동등한 관계로 이끌기 위해 또 다시 미국 정부에 항의하면서 외교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많았다. 당시 국무장관 윌리엄 제닝 브라얀은 이 사건이 미국과

²³ Alien Land Law로 알려진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은 미국 시민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토지를 리스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²⁴ 미주 한인 독립운동에 관해 다음 문헌 참조. Chang, Edward T. and Woo Sung Han(2015); Choy, Bong-youn(1979); Hyung-chan Kim(1996); Chang and Carol Park(2019).

일본의 외교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사건의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대한인국민회 북미 총회장 리대위가 미 국무장관 앞으로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냈다. “가주 남방 하변에서 우리 동포 11인이 6월 25일 살구를 따러 갔다가 백인에게 축출당한 사건으로 미국 정부에 일본 공사와 교섭이 되고로 본 총회에서 미국 정부에 그 사실을 들어 말한 후에 일인과 상관이 없게 해 달라”²⁵는 전보를 보냈고, 이후 『신한민보』는 7월 4일자 보도에서 이 사건이 마무리 된 것을 다음과 같이 보도 했다.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기 전에 한국을 떠났으므로 한인은 일인과 상관이 없다고 하여 헤밋 사건을 일본 정부와 교섭치 말라” 동시에 미 국무장관 브라운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일본 식민국민이 아님”을 공표하면서 대한인국민회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사실상 하였다. 이로써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의 대표 기관은 일본정부가 아닌 대한인국민회가 되었다. 이것은 미주 한인 독립 운동사에 매우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다. 즉, 미주 거주 한인들은 만주나 러시아 거주 한인들과는 달리 일본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만주와 러시아 영토에 거주하던 한인들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일본은 일본 군대와 경찰을 파견해서 한인들을 압박하고 독립운동을 탄압했던 것과는 매우 비교된다. 즉 이 사건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사실상 (de facto) 한국인의 법적 지위를 부여 시켜 줌으로써 미주 한인들은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만주나 러시아 영토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본 군대와 경찰의 탄압을 받았던 동포들과는 달리 미주 한인들은 일본의 간섭 없이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초기 미주 한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라

²⁵ *Los Angeles Times*, July 2, 1913; *The Hemet News*, July 4, 1913.

고 생각된다.

1916년 대한인국민회는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정식 허가장을 받아 본토로 이주하는 한인들이 쉽게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당시 미국 이민국은 중국인들의 이민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엔젤 섬에 이민국을 설치하고 중국인들의 이민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었다. 그런데 본토로 이주한 한인들은 중국인들에 비해 쉽게 샌프란시스코에 내리고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16년 3월 9일자 『신한민보』는 대한인국민회가 이민국으로부터 허가장을 받았다고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민국 허가장 – 북미총회장이 교체된 후 동양인으로부터 미주에 건너오는 동포 인도에 관한 특권을 계속 보유할 일을 상항 이민국에 교섭하여 이민국 커미셔너가 허가장을 발급.” 당시 대한민국은 일본의 식민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일본 식민국민”이 아니라 “한인”으로 사실상 인정받았고 동시에 대한인국민회는 미주 한인을 대표하는 행정 기관으로 인정받고 독립운동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던 것이다.

V. 맺는 말

이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1911년 중국혁명의 영향과 1919년 상해 임시정부로 이어졌다는 민주공화제의 ‘중국발’ 계보를 보완하여 1905년 공립협회, 1909년 대한인국민회, 1911년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로 이어지는 민주공화제의 ‘미국발’ 계보를 제시했다. 1909년부터 미주 한인 사회에서 안창호를 중심으로 삼는 대한인국민회와 기관지인 신한민보가 임시

정부 건설론과 민주공화제 도입을 적극 지지했으며 지금까지 전혀 주목 받지 못한 1911년 캘리포니아 주 리버사이드 파차파 캠프에서 개최된 제3차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에서 의결된 21조안 그리고 1917년 〈대동단결선언〉 내용을 비교하여 연관 관계를 증명하였다는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한다. 장규식은 “리버사이드 한인 타운에서의 디아스포라 실험은 북미 한인사회에 국한되지 않고 퍼져나가, 한인 민족운동 전반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장규식, 2020: 154). 즉 민주공화제의 ‘미국발’ 계보를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미주한인 사회가 주장한 임시정부 건설론이 리버사이드에서 1911년 11월 23일부터 시작하여 12월 4일 새벽 3시에 폐막한 제3회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에서 반영되어 21조 의안이 통과되었고 1912년 정식으로 무형 정부인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21조 의안 내용과 흡사한 조항들이 1917년 〈대동단결선언〉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주목할 것은 통과된 21조 의안 중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신설을 매우 비중 있게 다뤘는데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무형정부”의 공식적인 수립을 의미하며, 민주공화제 삼권분립 제도의 모습이 갖추어지기 시작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해외 한인들을 대표하는 중앙정부 또는 무형 정부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대의회와 대의원들이 입법부 활동을 했으며, 대한인국민회와 각 지역의 지방회는 자치규정을 두고 법을 위반하면 엄중한 벌칙을 가했고,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는 행정부로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삼권분립의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결정 사안들은 1917년 상해에서 발표된 〈대동단결선언〉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

또한 중앙총회 설립과 무형정부 설립을 주장한 박용만이 〈대동단결선언〉 14인 중의 한 명이며 〈대동단결선언〉 내용이 박용만이 평소 주장하던 내용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은 그를 통해 미국발 임시정부론이 상해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성이 있다. 1911년 12월 4일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에서 통과된 21조 의안이 〈대동단결선언〉로 연계된 것이 사실로 인정받는다면 상해임시정부 민주공화제 도입의 초석을 다진 것이 된다. 사회학적 상상력과 기록을 중시하는 역사학적 관점을 접목시켜 더 넓게 1948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민주공화제의 토대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도형. 2015. “도산 안창호의 여행권을 통해 본 독립운동 행적.”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5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김도훈. 1999. “1910년대 초반 민주한인의 임시정부 건설론.” 『한국근현대사 연구』 10, 246–270.
- _____. 2004. “안창호와 이강.” 도산학회, 『도산학연구 제 10집』, 서울, 도산학회.
- 김정인. 2015. 『민주주의를 향한 역사: 시대의 건널목』. 서울: 책과함께.
- 김정인. 2017.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개념으로 독립운동사를 새로 쓰다』. 서울: 책과함께.
- 대한민국문교부 국사편찬위원회 편찬. (1988). 『한민족 독립운동사3』.
- 도산사상연구회 역. 1993. 『변혁기의 혁명운동과 도산사상—도산사상연구 제2집』. 서울, 연구사.
- 도산학회. 2004. 『도산학구 제10집』, 서울, 도산학회.
- 박찬승. 2008. “한국의 근대국가 건설운동과 공화제.” 『역사학보』 200호: 305–344.
- 반병률. 2019. 『통합임시정부와 안창호, 이동휘, 이승만: 삼각정부의 세 지도자』. 서울: 신서원.
- 방선주. 1989. 『재미한인의 독립운동』, 춘천: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 연구소.
- 서희경. 2013. “대한민국 민주공화제 헌법의 자생적 뿌리.” 『내일을 여는 역사』, 16–34.
- 신용하. 1978. “도산 안창호와 신민회의 창립.” 도산기념사업회, 『안도산전서 하 : 연구 논문편』, 범양사 출판부, 56–61.
- 신주백. 2003. “민족운동세력의 공화주의. 공존의식의 변화에 관한 시론.” *세계의 일본연구*4, 국제일본문화 연구센타, 2–13.
- _____. 2017. “1910년 전후 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정체로 정치이념의 전환: 공화론과 대동론을 중심으로.” 150–182.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3.
- 안병욱. 1986.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안창호.” 이만근 엮음, 『도산여록』, 서울, 흥사 단출판부.
-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편. 2003. 『미주 한인의 민족운동』. 서울, 혜안.

- 유동식. 1988. 『하와이의 한인과 교회: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85년사』.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출판.
- 유재천. 1993. “도산 사회사상의 현대적 구현.” 도산사상연구회 역, 『변혁기의 개혁 운동과 도산사상-도산사상연구 제2집』, 서울, 연구사: 73–98.
- 윤경로. 1997. “도산연구의 새 지평을 위한 사례연구.” 도산사상연구회 편, 『도산사상 연구』제 4집.
- 윤대원. 2001. “한말 일제 초기 정체론의 논의 과정과 민주공화제의 수용.” 『중국현대사상연구』 제12: 53–75
- 이봉원. 2010. 『대한민국 임시정부 바로 알기』. 서울: 정인출판사.
- 이선주. 2003. “리버사이드에서의 도산 안창호의 활동: 1904–1911.” 『미주한인사회와 독립운동』, 미주한인이민 100주년 남가주기념사업회.
- 이영록. 2010. “한국에서의 민주공화국의 개념사 – 특히 공화 개념을 중심으로.” 『법사학 연구』 (42), 49–83
- 이준식. 2010. “도산 안창호와 사회주의.” 『도산학 연구』 13, 도산학회, 227–231.
- 장규식. 2020. “리버사이드 한인 타운과 북미 한인사회의 형성.” 『역사문화연구』 제76집: 121–160.
- 장규식. 2010. “도산 안창호와 초기 미주 한인사회의 자취를 찾아서.” 『도산학 연구』 도산학회, 제13집: 250–289.
- 장태한 · 윤지아 번역. 2019. 『미주 한인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 장태한. 2018. 『파차파 캠프: 미국 최초의 한인타운』. 성안당.
- 장태한 옮김. 2016. 『외로운 여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 전종익. 2017. “대한민국임시정부 이전 정치체제 구상.” 『법사학연구』 56: 226–227.
- 정상호. 2013. “한국에서 공화 개념의 발전 과정에 대한 연구.” 『현대정치연구』 6(2): 5–28.
- 차종환 · 민병용. 2004. 『사진으로 보는 미주 한인 이민 100년사: 1903–2003』. 미주한인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
- 홍선표. 2011. 『재미한인의 꿈과 도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 『공립신보』

『신한민보』

- Charr, Easurk Emsen. 1961. *The Golden Mountai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ang, Edward T. and Carol Park. 2019. *Korean Americans: A Concise History*. Riverside: Young Oak Kim Center for Korean American History, UC Riverside.
- Chang, Edward T. and Hannah Brown. 2018. "Pachappa Camp: The First Koreatown in the U.S." *California History*.
- Chang, Edward T. and Woo Sung Han. 2015. *Korean American Pioneer Aviators: The Willows Airmen*. Langham: Lexington Books.
- Choy, Bong-youn. 1979. *Koreans in America*, Nelson Hall Press.
- Hall, Joan. 1992. *A Citrus Legacy*. Riverside California: High Grove Press.
- Kim, Hyung-chan. 1996. *Tosan Ahn Chang Ho: A Profile of a Prophetic Patriot*. Tosan Memorial Foundation.
- Kim, Richard S. 2011. *The Quest for Statehood: Korean Immigrant Nationalism and U.S. Sovereignty 1905-194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ee, Mary Paik. 1990. *Quiet Odyssey*.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Mills, Wright C. 1959.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Moses, Vince. 2000. "Oranges and Independence: Cornelius Earl Rumsey and Ahn Chang Ho: An Early East-West Alliance in Riverside, 1904-1911." *Riverside Museum Associates Newsletter*, June.
- Riverside Daily Press. "Korean Labor Bureau." March 22 and October 20, 1905.
- Riverside Daily Press. January 8, 1906.
- San Francisco Chronicle. "Corea the Sleeping Land: Its Queer People, Strange Customs and Coming Awakening." December 7, 1902.
- Takaki, Ronald. 1998. *Strangers from a Different Shore*. Boston: Little Brown.
- Thun, Ellen. 1997. "Heartwarmers: Afterward; Changes." *Korea Times*. February

25, 18.

Wayles, Nym and San Kim. 1941. *Song of Ariran: A Korean Communist in the Chinese Revolution*. San Francisco: Rampart Press.

장태한, 민주공화제의 '미국발' 계보 – 대한인국민회와 〈대동단결선언〉

(투고일: 2021.3.31. 심사일: 2021.4.28. 게재확정일: 2021.6.7.)

자료 1: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에서 통과된 21조 의안

(신한민보, 국민회의 신서광 대의회 결안을 치하함, 1911년 12월 4일자)

1. 신한민보의 출판권을 중앙총회에 양여할 일

이유: 중앙총회의 기관보를 아직껏 발간하지 못함은 전체 활동상에 유감이 없지 아니할뿐더러 중앙총회의 위망을 보유하는데 대하여 또한 관계가 없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선 북미 지방총회의 기관지 신한민보를 중앙총회에 부쳐 우리 회의 전체 기관보를 삼게 하되, 중앙총회의 명의로 기관보 발행할 준비가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그 명의를 인구하여 신한민보로 발행함.

2. 신한민보사에 소속한 활판제구의 일습을 아직 일 년 간 중앙총회에 차여할 일

이유: 현금형세로는 중앙총회에서 새로 활판제구를 준비할 여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활자를 두 틀 중에 한 틀을 아직 빌렸다가 명년 대의회의 확실한 작정이 있게 함.

3. 본 총회에서 수봉하는 의무금 중 오백원을 중앙총회에 수납할 일

이유: 중앙총회의 각항 설비에 관한 경비를 보용케하기 위하여 우선 오백원을 기부하고 장정의 개정을 기다려 확정한 예납이 있게함.

4. 원동 각 지방회는 중앙총회의 직접 관할 밑으로 옮길 일.

이유: 중앙회부를 확장한 이상에는 미주 외에 있는 각 지방회를 북미지방 총회에서 관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정 제 42조에 의지하여 중앙총회에 이속케 함.

5. 상항에 있는 북미지방총회 위치는 로스엔젤레스 지방으로 옮길 일.

이유: 지방총회가 중앙총회와 신문사와 한 곳에 있는 것은 복잡함이 있을뿐더러 중앙총회의 체면을 보유하는 데 관계가 없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방총회의 위치를 미주 각 지방회의 중심이 되는 로스엔젤레스로 이설하게 함.

6. 의무금과 회금을 합병하여 년에 5원으로 정할 일.

이유: 의무금과 회금을 각각 받게 되면 동포의 짐이 무거울 것이기 때문에 특히 의무금의 성질을 고쳐 “교육과 구제와 회무 확장에 관한 경비를 보용케 함”으로 정함.

7. 각 지방회의 자치 경비는 매 회원에게 월 연금 10전씩 받을 일.

이유: 총 회의 예납과 교육금 구제금은 임의 의무금 중에 포함하였으나 지방회를 자치하는 데 관한 경비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월 연금만 인구하여 지방회로 직접 받아서 경비에 보충하게 함.

8. 특별 순행원 1인을 총회에서 책정하여 때때로 각 지방을 순행하게 할 일.

이유: 각 지방의 물정을 살피지 못하면 총회에서 적당한 정사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순행원을 두어 지방 동포의 정황을 총회에 전달하며 회무의 내정을 모든 회원에게 설명하여 정신을 관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타락하는 지경으로 향하는 동포를 견제 대한민족의 가치를 보존하게 함.

9. 재정 조사 위원 3인을 책정하여 각 문부를 조사하여 공표할 일.

이유: 각항으로 수입되는 재정은 일반 동포가 기억하기 쉬우나, 쓰는 명목도 확실히 알게 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회가 열린 이후에 각 년 문부를 조사하여 재정 출입을 명백히 하여 널리 알리게 함.

10. 본 총회 실업부에 실업 기본금을 세워 본 회의 목적을 실행할 일.

- ① 기본금은 공채의 성질로 정하여 모집할 일.
- ② 공채권의 액면 가격은 미화 25원과 상당한 가격으로 정할 일.
- ③ 공채 모집에 관한 연구위원 3인을 책정하여 지금부터 6개월 내로 조례를 제정하게 할 일.

이유: 본회의 원대한 목적을 실행하는 날에 준비한 재정이 없으면 실력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본금을 세워 동포의 실업 발전을 조력함은 본회 목적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조목을 세우는 것이다. 혹은 일정한

동맹금이나 의연금을 행하자는 의론이 있었으나, 본 의회에서 특히 공채의 성질로 의론을 정함은 이 공채권을 가진 당사자나 혹은 그 유족에게 후일 상당한 표장을 행하기로 주된 뜻을 정함.

11. 애국 동맹단 재정은 본 총회 실업부에 임시로 보관할 일.

이유: 본 총회의 항정한 경비 이회에 무슨 명목이던지 적립하는 금액은 모두 실업부에 두는 것이 마땅함.

12. 이범진 공의 기부금 도합 3500원은 이범진 공이 남기신 명목대로 나누어 줄 일.

- ① 신한민보사에 1000원
- ② 본 지방 총회에 1500원
- ③ 본 총회 교육부에 1000원

이유: 이 금액은 전토를 사는 일로 이미 총회 임원회의 의론이 있었으나 이범진 공의 뜻을 어김이 불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과 같이 분배하게 함.

13. 하목 공채의 이미 모집된 금액은 본 주인에게 도로 나누어 줄 일.

이유: 미주 각처에서 수금한 금액 229원과 아경리씨 또 271원 36전과의 양합은 500원 36전이요, 이근영씨 등 4인 완환부비 264원 81전과 이근영씨 등의 멕시코 보채 또 310원과의 양합은 574원 82전이니 오히려 부족이 74원 46전 이라. 이는 하와이 지방 총회로 더불어 방편을 의정한 후에 공채주에게 환파(?) 하기로 정함.

14. 클레몬트 학생 양성소 건축비 부족액은 본 총회에서 지출할 일.

이유: 이 집에 대한 건축비는 모두 동포의 연조금으로 되었고, 다만 미세스 스튜엇의 연조금 350원 밖에는 외국인의 재정이 들지 않았는데 이제 그 건축비 부족액 700여원은 이 집의 소유주를 확정한 연후에야 담당할 자가 생길 터이기 때문에, 건축 위원들로 하여금 그 집의 문권을 국민회 명의로 관청에 등록 켜 한 후에 본 총회는 그 소유주가 되어 부족액을 지출하고 이 집을 그 지방에

둘 때까지는 예배보는 처소만 한인 교회에 세 없이 빌려주기로 정함.

15. 전 총회장으로 작고한 송석준씨의 기념장을 만들어 팔아 그 유족에게 보낼 일.

송석준 공은 우리 회에 몸을 바쳐 초창할 때부터 여러 해 동안에 공적이 높으며 훈도가 만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돌아가지 못하고 만리 밖에 외로운 혼이 되어 그 유족의 정경이 참혹하니 동으로 오는 소식은 모두 우리의 무한한 감개를 자아내는지라. 총회의 재정이 넉넉하면 마땅히 유족을 건지는 일이 있을 것 이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공의 사진으로 기념장을 만들어 동정을 표하는 제 동포들에게 팔아, 그 금액을 송씨의 유족에게 보내서 일시적으로 구급을 행하게 함.

16. 본 총회 세칙 기초위원 2인을 정하여 현행 장정 범위 내로 세칙을 제정할 일.

이유: 현행 장정에 대하여 사무 처리에 필요한 조건을 들어 세칙을 제정함은 아무쪼록 규칙에 위반이 없게 하고자 함.

17. 실업부장은 그 임무를 아직 계속할 일.

이유: 공채 모집의 실행을 기다려 실업기관이 완전히 성립되기 전까지는 그 임원을 개선할 필요가 없음.

18. 매년 대의회 처소는 총회장의 지휘에 전속할 일.

이유: 명년 대의회 처소를 매양 금년 대의회에서 미리 정하던 관례가 있으나, 이제 총회 위치를 옮긴 이상에는 미리 정할 필요가 없고, 의례대로 총회의 위치된 지방으로 소집함이 올바른고로, 이 일은 총회장의 권한 내에 전속하게 함.

19. 각 임원을 투표하여 뽑음이 아래에 기록함과 같음.

〈북미지방총회 각 임원〉	
총무: 이 일 서기: 송종의 재무: 송종의 법무원: 강번 학무원: 조성환 구제원: 류성숙 외교원: 이 일	각년 재정문부 조사위원: 강번, 이병의, 김홍균
	실업기본공채 연구위원: 안창호, 황사용, 강번
	세칙 제정 기초위원: 안창호, 강번

20. 4245년(1912년)도 예산안을 아래와 같이 승인함.

이유:

- ① 국고의 예산 편제하는 법을 참조하여 특히 관(款) · 항(項) · 목(目)을 세워 부분을 구별함.
- ② 중앙 총회와 신문사의 예산은 마땅히 지방총회의 이상에 있을 것이므로, 본 총회 소관 경비는 제 3관으로 정함.
- ③ 일년 경비액은 매양 전년도의 적립한 금액으로써 후년도 예산을 편제함이 뗃떳한 법칙이라. 그렇기 때문에 4244년도의 의무금 미수액과 4245년도의 예산액 이외에 들어오는 금액은 마땅히 적립하여 내년도의 예산 편제를 준비하게 함.

예산안	
건국기원 4245년도 세입경상부(歲入經常部)	건국기원 4245년도 세출경상부(歲出經常部)
국민회 소관 경상 수입 예산서 제3관 북미지방총회 제1항 예납금 500원 제1목 중앙총회납 500원 제2항 교육비 160원 제1목 학생상여금 40원 제2목 적립금 120원 제3항 구제비 160원 제1목 구휼금 60원 제2목 부의금 20원 제3원 적립금 80원 제3항 여비 180원 제1목 총회장 순행비 50원 제2목 순행원 여비 80원 제3목 임시과원비 50원 제4항 봉급 420원 제1목 시무원 420원 (1인 월급 35원) 제5항 사무소비 180원 제1목 사무소 방세 60원 제2목 통신우비 30원 제3목 전보비 5원 제4목 전화비 25원 제5목 지필목 24원 제6목 운반비 5원 제7목 전등비 12원 제8목 예물비 5원 제9목 비품비 10원 제10목 잡비 4원 항 합계 1600원	국민회 소관 경상지출 예산서 제3관 북미지방총회 제1항 예납금 500원 제1목 중앙총회납 500원 제2항 교육비 160원 제1목 학생상여금 40원 제2목 적립금 120원 제3항 구제비 160원 제1목 구휼금 60원 제2목 부의금 20원 제3원 적립금 80원 제3항 여비 180원 제1목 총회장 순행비 50원 제2목 순행원 여비 80원 제3목 임시과원비 50원 제4항 봉급 420원 제1목 시무원 420원 (1인 월급 35원) 제5항 사무소비 180원 제1목 사무소 방세 60원 제2목 통신우비 30원 제3목 전보비 5원 제4목 전화비 25원 제5목 지필목 24원 제6목 운반비 5원 제7목 전등비 12원 제8목 예물비 5원 제9목 비품비 10원 제10목 잡비 4원 항 합계 1600원
건국기원 4245년도 세입임시부(歲入臨時部)	건국기원 4245년 세출임시부(歲出臨時部)
국민회 소관 임시 수입 예산서 제3관 북미 지방 총회 제1항 상년 이래 3500원 제1목 이공 기부금 3500원 항 계 3500원	국민회 소관 임시 지출 예산서 제3관 북미 총회 제1항 교육 기본금 1000원 제1목 교육기본적립금 1000원 제2항 학생양성소 800원 제1목 학생소 집값 부족 750원 제2목 결산 부족 준비금 50원 제3항 예비금 700원 제1목 예산 외 지출처 700원 제4항 신한민보사 1000원 제1목 상년도가하보상 1000원 항 합계 3500원

21. 대의회에서 총회에 권고하는 통첩을 보낼 사건은 아래와 같음.

- ① 각 지방 동포중 타락한 지경에 바쳐 후주잡기(*술주정과 노름을 이울러 말함) 와 아편쟁투 등의 일을 문란히 범하는 폐가 있으니 마땅히 장명 제 27조에 의지하여 금단하기를 권고할 일.
- ② 총회 공비학생 정등협씨의 자퇴하는 청원을 총회에서 상당히 처리할 일.
- ③ 본 총회 사무소를 로스앤젤레스로 옮겨올 기한은 본년 12월 30일 안으로 행할 일.
- ④ 신한민보사 재정 문부는 중앙총회 기관보 출간하기 전날까지 마감하여 중앙총회에 넘겨줄 것.
- ⑤ 본 총회와 몇 소관 각 지방의 각종 서류 중에 다수의 인원이 공동으로 볼 문서는 한문으로 쓰지 말고 순 국문으로 쓸 일.

본 대의회는 총회장 각하의 명령으로 원래 정한 일자에서 한 달 일찍 소집됨.

11월 23일 하오 2시 개회

12월 4일 상오 2시 반 폐회

참석한 대의원은 다음과 같음. (ㄱㄴㄷ 순서)

의장 (총회부회장) 강명화

대의원 (시카고) 강 번

(클레몬트) 김종혁, (리버사이드) 김인수, (레들랜쓰) 이치완, (새크라멘토) 이병익 (로스앤젤레스) 박재형, (샌프란시스코) 안창호, (로스앤젤레스) 조성환, (리버사이드) 차정석

『신한민보』 1911년 12월 11일자, 3면 “금번 대의회 의결안”

자료 2: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안창호 부부 인터뷰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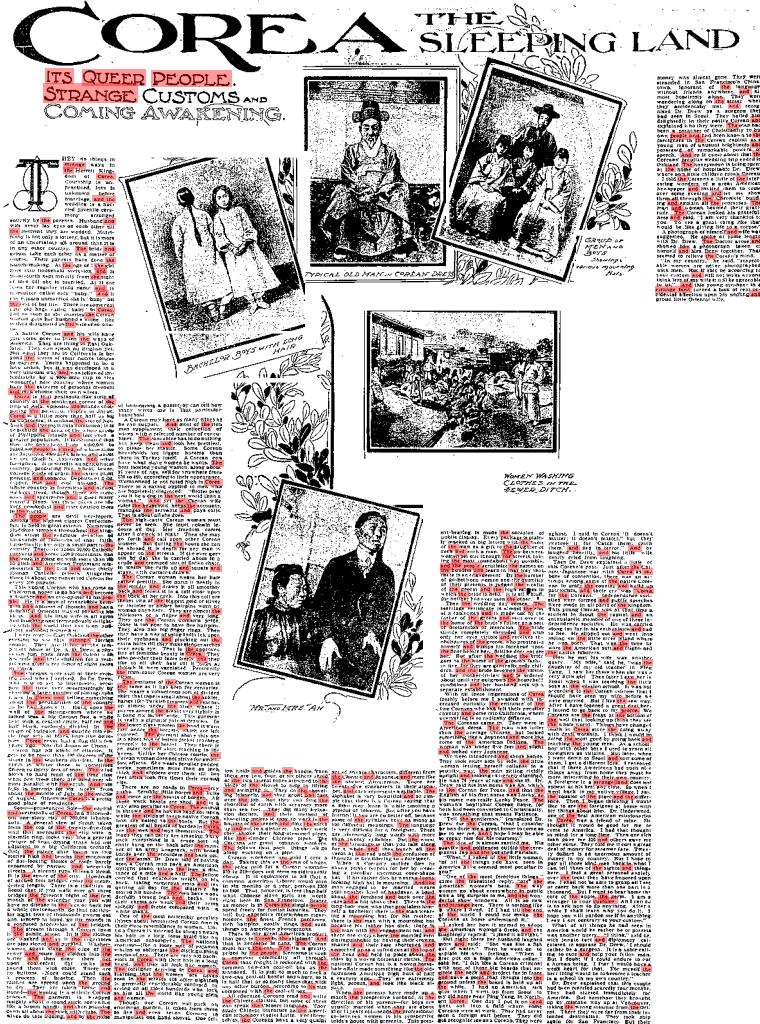
San Francisco Chronicle, 1902년 12월 7일 “Corea The Sleeping Land: Its Queer People, Strange Customs and Coming Awakening”

COREA THE SLEEPING LAND: ITS QUEER PEOPLE, STRANGE CUSTOMS AND COMING AWAKENING

San Francisco Chronicle (1869-Current File), Dec. 7, 1902;

ProQuest Historical Newspapers: San Francisco Chronicle

pg. 11



Reproduced with permission of the copyright owner. Further reproduction prohibited without permission.